

<평가관리번호 : 0-1-2023-04-0001 >

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통보서 (정기)

1. 기관명 : 열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(2-11215-00132)
2. 급여종류 : 방문요양
3. 평가예정일 : 2023년 05월 12일
다만, 사정에 따라 연장되거나,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
4. 자료제출 및 평가범위
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0조(자료의 제출 등)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
 -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3조(평가지표) 제2항에 의한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4조(장기요양급여의 관리·평가)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2023년 05월 02일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※ 문의 : 서울강원지역본부(전화 : 02-2126-8662~8667)

- *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7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)제1항제3호의7에 따라 평가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대상이며, 평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69조(과태료)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
- *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4조(평가의 절차 및 방법)제4항에 따라 공단은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

평가 사전 준비자료 협조 안내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 따라 실시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전준비 자료를 안내 하오니 평가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준비자료

- ① 5대 보험 가입증명 서류
- ② 퇴직금 지급여부 증빙 서류
- ③ 급여종류별 수급자, 직원 현황 (하단 양식 참조)
 -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는 평면도와 위치도 포함

2. 안내사항

- ① 평가 예정일에 평가를 실시하며, 천재지변 등의 사유 외에는 평가일정 변경불가
- ② 재가기관 평가 지표 중 '기관평가'는 지역본부 평가팀에서 수행
 - 기관평가 종료 후, 수급자 및 종사자 평가는 외부평가자가 방문 실시
 - ※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지역본부 평가팀 또는 운영센터 담당자 수행 가능
 -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의 수급자 및 종사자 평가는 기관평가 시 외부평가자가 수행
 - 다만, 복지용구 종사자 평가는 지역본부 평가팀이 실시
 - 서비스만족도 조사(유선) 지표는 공단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(고객센터 등)
-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평가의견수렴방을 통하여 평가 종료 후 의견 제시 가능
 - 경로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/ 로그인(공인인증서) / 기관평가 / 평가의견수렴방 등록
 - ※ 장기요양기관평가는 급여의 질을 평가하는 업무로써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조사, 서비스모니터링, 현지확인심사 등의 업무와는 구분됨을 안내합니다.

※ 참고양식

① 수급자현황

- 정기평가 : 평가매뉴얼 일반사항의 '지표적용기간'을 참고하여 지표적용 시작월부터 평가일까지 이용한 모든 수급자 (성명 가나다순)
- 수시평가 : 직전 정기평가월부터 수시평가일까지 이용한 모든 수급자 (성명 가나다순)

연번	수급자명	출생년도(성별)	주요질환	급여(대여) 개시일	급여(대여) 종료일	급여개시 인정등급	현재 인정등급	비고
1	김건강	1939년 (남)	치매	'21.3.1.	'22.5.31.	1		입원
2	이요양	1940년 (여)	중풍	'22.4.1.		2	3	

② 직원현황

- 정기평가 : 평가매뉴얼 일반사항의 '지표적용기간'을 참고하여 지표적용 시작월부터 평가일까지 1회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(성명 기간 순)
- 수시평가 : 직전 정기평가월부터 수시평가일까지 1회 이상 급여를 제공한 직원 (성명 가나다순)

연번	직원명	출생년도(성별)	자격구분	입사일자	퇴사일자	재직기간	비고
1	박기관	1984년 (남)	사회복지사	'20.11.1.	'22.12.31.	25개월	
2	최평가	1974년 (여)	요양보호사	'21.11.1.		22개월	